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특성과 실태*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Library E-book Purchase Contracts

이 호 신 (Hosin Lee)**

목 차

- | | |
|----------------------|------------------------|
| 1. 여는 말 | 4. 전자책 수급 계약의 실태와 개선방안 |
| 2. 전자책 대출의 법적·기술적 환경 | 5. 닫는 말 |
| 3. 전자책 수급 계약의 법률적 성격 | |

초 록

이 연구는 전자책 수급 계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 사례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heck whether e-book purchase contracts have sufficient requirements to serve as legal basis for e-book lending outside the library, and also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brary's e-book purchase contracts. To this end, the legal and technical environment related to e-book lending was reviewed, and the elements that must be included in the license contract were summarized as the legal basis for e-book lending. Based on this, it was analyzed whether these requirements were properly reflected in actual contract cases. For three years from 2020 to 2022, the actual 43 contracts that were bid through the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ere inspected, and then problems were pointed ou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키워드: 전자책, 디지털도서관, 저작권, 계약, 라이선스

E-book, Digital Library, Copyright, Contract, License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학 트랙 부교수(leehs@hansung.ac.kr / ISNI 0000 0004 6462 7275)
논문접수일자: 2023년 2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2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435-456,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435>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여는 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이라 한다)는 지난 2021년 2월 전자책의 관외대출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발송했다. 같은 해 5월 출판사 8곳¹⁾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출판사의 저작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의 주장은 전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관내를 벗어날 수 없고, 전자책을 관외로 대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대로 저작권법이 도서관에 허용하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저작권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는 도서관 내부(자관 내 또는 다른 도서관 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사정은 전자책이라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해당 조항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관이 저작물을 복제와 전송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이 규정한 면책의 요건을 벗어나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을 얻었다면, 도서관이 전자책을 관외로 대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과정에서는 저작재산권자와 도서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저작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서관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얻기는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자책의 이용 허락은 전자책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도서관과 유통업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저작재산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유통업체가 도서관과 전자책 수급²⁾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행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책 수급 계약 속에는 전자책의 수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함께 저작물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상세하게 명기한다. 이를 통해서 유통업체와 도서관은 거래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훗날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게 된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

1) 2021년 5월 6일 (주)메디치미디어, (주)다산북스, (주)마이디팜, (주)새로운사람들, (주)학지사, (주)도서출판 한울출판사, 가교출판, 페이퍼로드 8개 출판사가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였다(2021가합532586).

2) 도서관이 전자책을 수급하는 방식은 소장형과 구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장형은 전자책 파일을 제공받아 도서관이 해당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물품 구매 형태의 계약이다. 구독형은 유통사가 제공하는 전자책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소장형은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구독형은 물품의 구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접속 권한만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자책을 구입 또는 구매하는 행위로 통칭할 수 있지만, 전자책 파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소장형과 구독형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수급, 소장형의 경우에는 구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였다.

이어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전자책의 수급 과정에서 체결한 저작물 이용 허락의 조건을 얼마나 잘 준수하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전자책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단순한 물품 구매 계약이 아니라, 전자책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라이선스 계약)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다. 또한 전자책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원 계약이 되기도 한다. 계약은 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결정지어 준다.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자책의 서비스를 둘러싼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동안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안들이 논의되었지만(양지열, 2012; 이용훈, 박상미, 2012; 김찬동, 2014; 백지원, 2014; 오지은, 2014; 구모니카, 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a; 신정아, 2021; 오지은, 2021; 이호신, 2021a; 이호신, 2021b; 한주리, 2021), 출판계와 도서관계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갈등의 상황이 첨예하게 지속된다면, 또 다른 도서관으로 소송의 불뚱이 옮겨붙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도서관들이 전자책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 체결하는 실제 계약 속에는 전자책의 관외대출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담겨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전자책 수급 계

약이 전자책 관외대출의 합법적인 근거로서 역할하기에 충분한 요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전자책 수급 계약의 현황과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법적·기술적 환경을 고찰하고, 전자책 관외대출의 법률적 근거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의 사례들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진 계약 43건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 전자책 대출의 법적·기술적 환경

2.1 법률적 환경

도서관의 (종이책) 대출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도서의 대출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수록한 유체물(도서)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행위로, 저작권법상의 배포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배포권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조항의 단서 규정은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으로 불리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본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인 배포권이 더 이상 미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다. 판매 등의 적법한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포권이 미치지 않도록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도서(종이책) 대출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한 까닭은 바로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이책과는 달리 전자책의 대출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책의 대출은 도서에 대한 배포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대출은 물품(책)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버에 탑재된 저작물 파일을 이용자 PC로 보내고 이를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와 전송에 해당한다. 배포와는 달리 복제와 전송은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책을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도서관이 전자책을 시민들에게 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전자책의 대출을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한편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³⁾과 제3항⁴⁾은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다. 제2항은 도서관 관내에서의 복제와 전송을, 제3항은 도서관 상호간 복제와 전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도서관에 보관된 종이책의 디지털화와 전송뿐만 아니라 전자책의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한 전자책을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하거나 다른 도서관의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행위는 일정한 요건을 준수한다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관외대출은 저작권법이 도서관에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이호신, 2021a).

전자책의 관외대출을 위해서는 도서관은 저작재산권자(또는 배타적발행권자)와 해당 전자책의 관외대출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도서관이 개별 전자책에 대해서 일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구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매하는 까닭은 시민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

3)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31조 제2항).

4)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31조 제3항).

정에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인 관행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연구(2020a)에 따르면, 도서관과 출판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으며, 전자책 유통사가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유통사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전자책 대출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는가를 확인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유통사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어도 라이선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당 계약은 무효에 해당하고,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전자책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도서관이 전자책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유통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된다(이호신, 2021a). 계약은 거래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강행법규의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 법률에 우선하게 된다. 라이선스 계약은 전자책의 관외대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에 해당한다. 라이선스 계약 속에 전자책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2.2 전자책 대출에 필요한 기술적 환경

도서관에 입수된 도서들은 분류와 편목 작업

을 거쳐서 청구기호가 기재된 레이블을 부착하는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된다.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분류와 편목 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서가에 배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을 부착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저작물의 내용과 표현을 읽을 수 있으려면 적절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

종이책과는 달리 전자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따라서 전자책 그 자체만을 수급하는 것으로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이를 서비스할 수가 없다. 전자책은 도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텍스트, 그래픽, 동영상 등 PDF, HTML, EPUB 등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작성된 컴퓨터 파일이다. 전자책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해당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뷰어, 열람을 위한 단말기 또는 리더기 등이 함께 필요하다(신정아, 2021, 98). 그리고 전자책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대출 정책을 반영해서 콘텐츠를 관리하고 통계 산출이 가능한 관리시스템, 전자책을 검색하고 대출할 수 있는 이용자시스템,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신정아, 2021, 100).

이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불법적인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저작물의 불법적인 다운로드나 허가받지 않은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시스템이 함께 필요한 것이다.

전자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 이외에 전자책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림 1>과 같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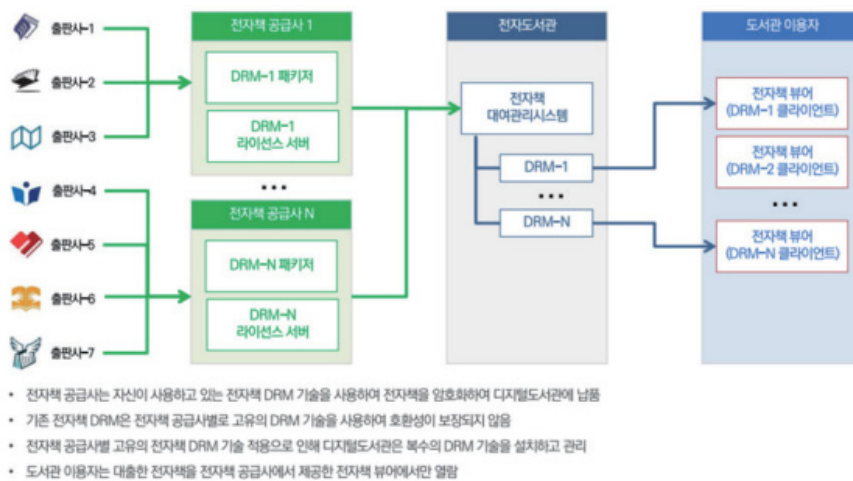
3. 전자책 수급 계약의 법률적 성격

3.1 전자책 유통업체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적격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책을 적법한 경로로 수급했다고 해서, 도서관이 해당 전자책을 관외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관외대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급 행위와는 별도로 전자책의 관외대출에 대한 저작권산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도서관은 전자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통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도서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유통사가 계약의 주체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계약이란 복수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제공하는 유통업체의 의사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도서관의 의사가 합치를 이루어야만 적법한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다.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매하려는 까닭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자책을 입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입수된 전자책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복제와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산권자(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통업체는 도서관이 해당 전자책을 이용자



<그림 1> 전자책 관외대출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처리 프로세스

(출처: 신정아, 2021, 98)

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계약의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허락의 권한은 본래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있지만, 저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서 저작재산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유통사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게 된다. 만일 유통사가 적절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라이선스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으로서의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고, 도서관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저작재산권자나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후에 유통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이호신, 2021a).

유통사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는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된 출판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출판계약의 유형은 단순이용허락, 독점이용허락, 저작재산권 양도,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이용허락은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판사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저작자가 제3자에게 또 다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순이용허락과 독점이용허락으로 구분이 된다. 이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모든 권한은 저작자가 행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저작자

에게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 전자책의 후속 유통을 위해서 유통사를 비롯한 제3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출판사와 유통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유통사가 도서관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저작자에서 출판사 그리고 유통사로 이어지는 권한 위임의 연결고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끊어지게 되면 유통사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적법한 지위를 갖출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유통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한편 저작자와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출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판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후속 이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이 경우 출판사와 유통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속에 유통사가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대한 허락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통사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적법한 지위를 갖출 수 있다.

한편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출판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저작재산권자)가 제3자(배타적발행권자)에게 설정행위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정하여 준 배타적인 권리(저작권법 제57조)를 뜻한다. 배타적발행권의 내용은 설정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며, 설정행위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발행, 복

제,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된 배타적발행권에 배타적발행권자가 전자책의 후속 유통과 이용을 위해서 제3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배타적발행권자의 권리 범위는 설정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유통사를 비롯한 제3자에게 저작물을 복제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야만 후속 이용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가 없다.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만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에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범위에 저작물의 유통과 후속 이용을 위한 권리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부터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권한은 배타적발행권자에게 귀속

된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가 유통사에게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 유통사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적법한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는 달리 배타적발행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계약상에 따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 후 3년 동안 배타적발행권이 유효하다. 따라서 유통사가 배타적발행권자를 대신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배타적발행권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적법하다. <그림 2>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도표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유통사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개개의 전자책에 대해서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출판사와 유통사의 계약, 배타적발행권의 유효기간을 모두 확인하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설령 개개의 전자책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려고 해도, 출판사와 유통사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그림 2>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라이선스의 흐름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방법은 실제로 없다. 이런 까닭에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에 따라 유통사를 신뢰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유통사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출판사의 배타적발행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구모니카, 2015). 도서관은 다량의 저작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언제나 이런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3.2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를 이룸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반되는 두 의사표시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자책의 구매와 서비스를 위한 유통사와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 사항이 포함되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추게 된다. 계약 자치의 원리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선택, 내용, 방식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강행법규의 내용을 위반하는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효가 된다(곽운직, 2001, 38). 따라서 도서관과 유통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자유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을 통해서 쌍방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조건은 쌍방의 합의에 따

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구매하여 서비스하고자 하는 전자책의 내역과 이용 조건 그리고 이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명시하고 쌍방의 합의가 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면 된다. 여기에는 도서관이 전자책을 구매해서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저작물 이용 허락의 조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가 도서관에 부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역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전자책 수급과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그러나 저작물을 적법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전자책의 관외대출을 위한 복제와 전송의 주체를 결정해야 한다. 도서관이 전자책을 자체 서버에 탑재하고 직접 복제와 전송의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나 유통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탑재된 전자책에 대한 서비스 권한만을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서비스의 실제 제공자를 결정하고, 아울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의 소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자는 도서관이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후자는 유통사나 출판사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둘째,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리의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 번의 계약으로 해당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지고 있고, 배타적발행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기도 하다(양지열, 2012; 구모니카, 201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이용 회차로 도서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내 도서관에서도 일정 기간 서비스 권한을 취득하고, 이후 다시 권리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셋째, 전자책 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다. 동일한 전자책에 대해서 동시 사용자를 몇 명에게 허용할 것인가,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도서관 내부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 확대할 것인지 등 도서관이 제공하려는 서비스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 계약을 이용해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중앙도서관이 계약을 체결하지만, 지역 내의 또 다른 도서관들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해당 도서관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객체가 되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역이다. 통상 전자책 구매와 서비스 계약은 다량의 전자책을 대상으로 유통사와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계약서에 해당 전자책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별지의 목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경우 저작자나 출판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개별 계약의 내용은 전자책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작성한 내용이 해당 전자

책과 일치하는 것인가를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만 한다.

전자책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의 내용과는 별도로, 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유통사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자책에 대한 MARC 데이터 납품, 전자책의 대출과 이용에 필요한 솔루션과 DRM에 대한 기술 지원, 통계 처리 등에 관한 항목 등 도서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복합적인 내용을 전자책 수급 계약에 함께 포함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4. 전자책 수급 계약의 실태와 개선방안

4.1 전자책 수급 계약의 실태

4.1.1 조사의 방법과 대상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및 이용 허락 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라장터⁵⁾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이루어진 전자책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대상으로 계약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자책 수급 계약의 추세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기간은 최근 3년으로 제한하였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코너에서 '도서관 전자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5) <https://www.g2b.go.kr>

을 한 결과, 전산시스템 개발과 하드웨어 구매 건 등을 제외하고 2020년 11건, 2021년 17건, 2022년 15건, 총 43건의 입찰공고를 검색할 수 있었다. 검색된 입찰공고 43건 가운데 29건은 공공도서관, 5건은 학교도서관, 6건은 대학도서관, 3건은 전문도서관이 발주한 것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건, 강원권 1건, 충청권 14건, 영남권 18건, 호남권 1건이었다. <표 1>은 조사 대상 계약의 관종별 및 지역별 분포를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입찰공고에 제시된 개별 입찰 건에 제시된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와 구매내역을 분석하여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와 이용 허락 계약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해당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제 서비스 내역을 함께 분석하였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적정성, 계약의 유형과 전자책 수급 가격,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이 조사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근 3개년간의 입찰공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도서관들의 전자책 수급 계약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 3개년 동안 전국의 도서관들이 전자책 수급 계약을 추세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실제 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약을 위해서 제시된 과

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1.2 계약당사자로서의 적정성

입찰공고만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적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계약을 준비하는 도서관들이 계약당사자의 적절한 요건을 제시하고, 확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계약은 단순히 전자책을 납품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수급한 전자책을 관외대출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라이선스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로서의 적정성은 계약의 상대방이 도서관의 전자책 관외대출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자인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위임받았는가를 확인해야 파악할 수가 있다.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구입 대상이 되는 개별 전자책 종별로 권리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적게는 수백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에 이르는 대상 도서마다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입찰공고를 게시한 도서관들은 대체로 이러한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전자책의 납품을 완

<표 1> 조사대상 도서관의 관종별 및 지역별 분포

구분	관종별				지역별				
	공공	학교	대학	전문	수도권	강원권	충청	영남권	호남권
2020년	8	2	1	0	2	0	5	3	1
2021년	11	2	3	1	4	0	7	6	0
2022년	10	1	2	2	4	1	2	8	0
계	29	5	6	3	10	1	14	18	1

료하는 시점에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독형으로 전자책 유통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할 권한을 얻게 되는 거래의 유형을 제외하고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구매하는 도서관들은 대체로 전자책 납품 시에 유통사로 하여금 라이선스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해서, 유통사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실제 라이선스 인증서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인가를 이 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 참가 자격에 '직접 저작권자(저자, 출판사 등)와 전자책 출판 및 기관 판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한 전자책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찰 과정에서 실제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당사자 적정성을 선언적으로 제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유통사가 위임받은 권한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도서관이 파악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유통사의 권한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가의 여부는 계약의 유효기간을 확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배타적발행권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유효기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저작물 이용 기간(대부분의 도서관이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이 과연 적법한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체결되는 계약은 배타적발행권과 그 유효기간에 대한 고려를 전혀 담고 있지 않으며,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고, 배타적발행권자나 유통업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요건을 인증서 제출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은, 수급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전자책에 대해서 그 관리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따르는 실무적인 부담이 작용한 까닭이라고 보인다. 아울러 저작권이나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까닭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체로 도서관 유통사들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1.3 전자책 수급 계약의 유형과 특성

나라장터에서는 43건의 조사 대상 가운데 42건은 물품구매계약, 1건은 용역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자책을 소장형으로 구매해서 도서관 서버에 탑재하는 구매 계약이 39건, 일정한 기간 전자책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구독형 계약이 4건에 해당했다. 소장형뿐만 아니라 구독형의 경우에도 물품 구매로 계약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어서, 전자책을 수급하고 이용 허락을 얻는 과정을 물품 구매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는 연도별 계약의 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국내 전자책 구매는 소장형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구독형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

〈표 2〉 연도별 전자책 계약의 유형

구분	소장	구독	계
2020	11	0	11
2021	16	1	17
2022	12	3	15
계	39	4	43

적으로 소장형⁶⁾은 도서관이 전자책 파일을 소유하면서, 영구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전자책 파일을 구매하는 형태의 계약을 일컫는다. 소장형 39건은 모두 도서관 자체 서버에 전자책을 탑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백업용 CD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자체 서버에 전자책을 탑재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의 주체가 도서관이 되는 것임을 의미하며, 향후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도서관이 부담하게 됨을 뜻한다. 이를 염려한 까닭 때문인지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납품한 전자책의 저작권 및 전송권 위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와 같은 문구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가 계약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도서관의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의 효력은 납품업체와 도서관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저작권자와 도서관 사이에서는 아무런 의미나 효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전자책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도서관이 부담하는 것이

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도서관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문구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근거 조항에 불과하다. 도서관이 저작권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려면,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의 주체가 도서관이 아니라 납품업체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서버가 도서관이 아니라 납품업체의 것이어야 한다.

구독형은 도서관의 자체 서버에 전자책을 탑재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사이트에 대한 일시적인 접속 권한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조사된 구독형 4건 가운데 2021년의 1건은 일정 기간 구독 권한을 취득하는 기간 제한 형태의 계약이었으며, 2022년의 3건은 일정 기간 접속을 허용하면서 이용자가 전자책을 대출하는 건수에 따라 후불로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이용자의 실질적인 도서 대출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하는 서비스(Pay per Circ)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부산도서관과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은 2022년에 후불형 대출당 과금 모델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

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a)은 전자책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어서 소장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백업용 CD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구적인 소유권과 서비스 권한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형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확하고 이를 대체하여 ‘영구서비스형’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 전자책에 대해서만 과금의 대상이 되는 형태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해서 도서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다(오지은, 2014; 오지은, 2021). 실제 이용된 책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부담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시장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다른 도서관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구매하는 39건의 계약 모두에서 공급자에게 DRM 시스템과 전자책 뷰어의 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35건은 전자책에 대한 MARC 데이터의 제공까지 함께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매 계약은 전자책이라는 물품의 구매 계약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전자책의 열람과 대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제공과 유지에 관한 기술 지원 계약, 그리고 도서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도서관 서버에 전자책을 탑재하는 모든 도서관들은 전자책 열람에 필요한 뷰어 프로그램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을 전자책 공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1.4 전자책 구매 종수와 가격

구매 종수를 파악할 수 있는 33건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자책 1종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평균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77,635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당 평균 구입 금액은 2020년에는 63,802원, 2021년 74,204원, 2022년 99,921원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에는 2020년에 비해서 전자책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57% 가량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도서관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연도별 전자책 구매 계약에 대한 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자책 1종당 가격이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책을 구매할 때 동일한 도서를 동시에 여러 카피를 구입하기 때문이다. 이 비용 속에는 MARC 데이터의 구축과 전자책 뷰어 및 DRM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책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 틀림이 없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동일한 전자책 1종에 대해서 5 카피를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의 규모나 전자책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될 도서관의 수에 따라서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도서의 경우에는 10~25카피씩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단일도서관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대학도서관

<표 3> 전자책 구매 종수와 종당 평균 단가

구분	2020	2021	2022	계
입찰건수	9건	14건	10건	33건
구매총액	519,923,320원	1,200,915,670원	754,399,920원	2,475,238,910원
구매종수	8,149종	16,184종	7,550종	31,883종
종별평균단가	63,802원	74,204원	99,921원	77,635원

관들의 경우에는 도서에 따라 적게는 1카피, 많게는 5카피를 구매했다. <표 4>는 연도별 구매 건별 구매 카피 수를 정리한 것이다.

4.1.5 전자책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

전자책 수급 계약은 도서관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는 라이선스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에 이용 허락의 조건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전자책 대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실제 계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계약에 명기된 조건의 범위에 따라 도서관의 서비스 방법과 범위가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 이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이용 허락의 유효기간 등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5>는 연도별

계약에서 라이선스의 주요한 내용이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서비스 이용의 주체를 살펴본다. 조사 대상 계약의 대부분은 도서관이 발주한 것이지만,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의 주체가 된 까닭은 관할 구역 내의 도서관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다. 출판계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계약으로 여러 도서관이 한꺼번에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a; 한주리, 2021), 저작물의 이용 허락 조건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를 분명하게 명기하고 쌍방이 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법적인 계약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실제 계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자책 수급 계약은 단일도서관을 이용 주체로 설정한 경

<표 4> 연도별 전자책 구매 건의 전자책 1종당 구매 카피 수

구분	2020	2021	2022	계
5Copy이상	0	3	4	7
5Copy	6	6	6	18
5Copy이하	4	4	1	9
구독	0	1	3	4
미확인	1	3	1	5
계	11	17	15	43

<표 5> 연도별 라이선스 계약의 주요 내용 분석

구분	이용 주체		장소적 범위		동시 사용자 제한		소계
	표기	미표기	표기	미표기	표기	미표기	
2020	5	6	1	10	0	11	11
2021	10	7	1	16	1	16	17
2022	13	2	0	15	2	13	15
계	28	15	2	41	3	40	43

우와 관할 구역 내 복수의 도서관을 염두에 둔 경우로 나누어진다. 산하에 별도의 도서관을 두고 있지 않은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경우에는 단일도서관을 이용 주체로 염두에 두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도서관의 경우에는 관할 도서관의 회원 전체가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경우였다. 단위도서관에서만 이용하려는 경우가 전체 계약의 44.2%에 해당하는 19건이었고, 관할 구역 내 도서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56.8%에 해당하는 24건이었다. 단위도서관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을 과업 지시서 상에 표기한 경우보다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통합 활용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용 주체의 범위를 표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24건 가운데 4건은 이용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시급히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관할 도서관 전체가 이용했을 경우에는 출판사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자책 서비스를 도서관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이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서관 회원 가입자의 무제한적인 확대에 대해서 출판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a)을 고려하여, 회원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가를 계약상에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43건 가운데 단 2건을 제외한 41건이 서비스의 장소적 범위(도서관 관외대출)를 전혀 명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대상을 통합회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도서관이 전자책을 이용자들이 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관외대출 서비스의 합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워져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아마도 도서관 담당자들은 전자책 서비스는 당연히 도서관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용자의 범위만을 특정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정이 아무리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상에 명확하게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도서관 외부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기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출판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법한 대항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전자책을 외부로 대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도서관 면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때문에 저작재산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협이 전국의 공공도서관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위 또는 이용 대상을 표기하는 것만으로는 전자책을 관외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도서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아울러 그 서

비스가 도서관 관외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여, 전자책 서비스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전자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는 구독형 4건과 소장형 2건에 불과했다. 구독형의 경우에는 2021년의 1건은 구독을 위한 이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고, 2022년의 3건은 동시 사용자 수 무제한이라는 점을 과업지시서에 분명하게 밝혀 놓고 있었다. 소장형의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이 전자책을 5카피씩 구매하고 있지만, 구매한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 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동시 사용자수를 DRM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상의 제약이 계약서 상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이 전자책 1권을 구입해서 전국의 모든 이용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역측을 펼치기도 한다. 이 부분 시급히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구매하면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소장형 39건 가운데 33건은 구매한 전자책을 도서관이 영구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6건은 서비스 가능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해당 전자책에 대한 출판사나 유통사의 판매 및 라이선스 정책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수급하

는 경우 반드시 해당 전자책을 대출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범위를 명기해야 할 것이다. 배타적발행권과 관련해서, 그 유효기간이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에 그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그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적어도 해당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서비스할 목적으로 전자책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를 명기할 필요는 분명하다.

4.2 진단과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서, 전자책 수급 계약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서 진단할 수 있다. 첫째, 전자책 수급 계약을 물품 구매의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계약의 내용은 물품 제공, 기술 지원, 용역, 라이선스 등이 얹힌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책의 수급과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전자책의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DRM이나 뷰어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그리고 전자책에 대한 MARC 데이터 제공까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독형을 제외한 전자책 수급 계약은 물품 납품, 기술 지원, 데이터 구축 용역 제공 등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기술 지원이나 데이터 구축 용역 제공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책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한 종의 전자책을 복수의 카피로 구입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자책의 가격을 눈에 보이지 않게 상승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으며, 특정한 업체에게 도서관이 기술

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신정아(2021)는 전자책 유통사별 DRM에 따라 뷰어도 다르고, 이로 말미암아 도서관이 기술적으로 종속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 국내 도서관은 전자책을 영구적인 소장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구독보다는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독형으로 전자책을 공급하는 경우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거래의 조건을 소장형이나 구독형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도록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어서, 다양한 거래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일부 출판사의 경우에는 전자책의 도서관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아,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전자책 1종에 대한 구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3개년 동안 1.5배의 인상 폭은 매우 급격한 것이다. 전자책의 가격에는 뷰어, DRM 시스템 적용, MARC 데이터 구축 비용까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비용을 도서관이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도서관들은 통상 한 종의 전자책에 대해서 5카피씩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양한 구매 조건과 거래 형태를 통해서 전자책의 공급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자책 공급을 위한 모든 계약서에 저작권과 관련된 언급을 포함하고 있지만, 저작권에 관한 책임을 유통업체에 부담하게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저작물 이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책의 대출이 관외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취약한 처지에 놓일 위험이 있다. 라이선스의 내용에는 저작물의 이용 주체, 이용의 구체적인 방법(이용자의 범위, 장소적 범위, 기간적 범위, 동시 사용자의 통제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책의 공급 방식을 구입에서 접속(access)으로 개편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품 제공, 기술 지원, 용역 제공, 라이선스 계약 등 다양한 성격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전자책 공급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과 이에 따르는 기술 지원 계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들은 전자책을 여전히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자책을 소장하는 것의 실익은 그리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전자책 파일을 도서관 서버에 탑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의 지속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굳이 전자책을 소장하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만 있다면, 소장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자책을 도서관 서버에 탑재하고 복제와 전송의 주체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담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유통업체

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 책임의 당사자는 도서관이 아니라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플랫폼의 운영 주체가 된다. 유명무실한 소장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전자책에 대한 접속 권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으로 수급 정책을 개편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라이선스와 과금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거래의 조건을 다변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계약 형태는 도서관이 일률적으로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책 타이틀만을 수급하는 형태이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소장형 위주로 전자책을 수급하고 있어서, 소장형으로는 도서관에 전자책을 제공하기를 꺼리는 적지 않은 출판사들의 전자책이 수급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거래의 조건을 수용하는 거래의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출판사들도 도서관 서비스에 필요한 라이선스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도서관이 전자책의 서비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한편 전자책 한 종의 가격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방식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자책 뷰어와 DRM, MARC 데이터의 구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이라고 해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다. 2022년에 일부 도서관에서 도입한 대출 건수에 비례해서 후

불로 대금을 지급하는 모델은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출판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도입을 망설일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셋째, 현재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라이선스의 조건을 상세하게 명기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 이용의 주체(서비스 제공의 주체,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와 그 제한 방법), 라이선스의 기간, 세부적인 이용 방법(동시 사용자의 통제, 전자책의 출력, 관외대출의 허용 여부 등)을 분명하게 명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을 개발해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0b)이 개발한 표준계약서(안)에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항목도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표준계약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우선 이것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닫는 말

초기의 전자책은 종이책을 디지털 형식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종이책의 재현을 넘어서 디지털콘텐츠가 지닌 속성과 기능을 반영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조정미, 공병훈, 2017). 코로나19는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는 기폭제로 역할하면서, 전자책 열람을 도서관 서비스로 확

고하게 자리 잡도록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밀리의 서재나 SAM(교보문고)과 같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까지 약진하면서 전자책은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보다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이런 만큼 앞으로 도서관에서도 전자책 서비스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출판계와 도서관계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급기야 이런 갈등은 법률적인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 안정성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연구는 도서관이 전자책의 수급을 위해서 유통사와 체결하는 계약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둘러싼 법률적, 기술적 환경을 점검하였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대출과는 달리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복제와 전송을 통한 이용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전자책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뷰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불법적인 이용이나 허가 받지 않은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DRM과 같은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전자책 대출의 법률적 근거를 구성하는 라이선스 계약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세밀하게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나라장터의 입찰공고에 게시된 전자책 수급 계약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도서관들은 전자책의 수급을 물품 구매 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은 전자책의 열람을 위해서 필요한 기

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두루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국내 전자책 수급 계약의 대부분은 한 번 구입으로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소장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독형으로 전자책을 수급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최근 3개년 동안 전자책 수급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함께 밝혔다. 그리고 국내 도서관들이 제시하는 전자책 수급 계약에서의 라이선스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었다. 특히 전자책의 관외대출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아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전자책 수급 형태를 '구입'에서 '접속'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다양한 라이선스와 과금 유형을 전자책 수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거래의 조건을 다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자책 라이선스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표준계약서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전자책이 등장하고 도서관이 서비스하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전자책은 종이책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진화하면서, 지식과 정보 유통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서관 서비스에서 그 비중은 점차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법률적인 기반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구모니카 (2015).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창의문화연구*, 4(1), 76-95.
- 곽윤직 (2001). *채권각론*. 서울: 박영사.
- 김찬동 (2014). 전자책 공공 수요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법률 제언.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51-53.
- 백지원 (2014).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대응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113-135.
- 신정아 (2021).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4(2), 97-112.
- 양지열 (2012). 법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 *기획회의*, 330, 42-45.
- 오지은 (2014).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발전적 전략 모색에 관한 공공도서관의 입장.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49-50.
- 오지은 (2021).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도서관계의 입장.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자료*.
- 이용훈, 박상미 (2013).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3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발표자료*, 69-81.
- 이지연 (2014).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발전적 전략 모색. *전자출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집*, 3-24.
- 이호신 (2020).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방식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창립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43-57.
- 이호신 (2021a).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저작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131-154.
- 이호신 (2021b). 전자책 구매 개선 방안.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자료*.
- 조정미, 공병훈 (2017). 디지털 기술 발전과 전자책 진화 단계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26, 185-208. UCI: G704-SER000003070.2017..26.010
- 한주리 (2021).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상생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7(6), 107-129.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a).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개선을 위한 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b).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홍정표 (2018). 학술전자책의 판매방식과 가격정책에 관한 출판업 종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4(1), 97-1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k, Ji-Won (2014). E-book lending service in public libraries: issues and possible countermeasur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113-135.
- Cho, Jung-mi & Kong, Byoung-Hun (2017). A study on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book evolution. *Global Culture Contents*, 26, 185-208.
- Goo, Monica (2015). Issues and revision of electronic library service: focusing on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e-book BtoB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Glocal Culture*, 4(1), 76-95.
- Gwak, Yunjik (2001). *Law of obligations Details*. Seoul: Bakyoung-sa.
- Han, Julie (2021). Study on the win-win plan of library e-book service on the controversial issues with publishers. *Studies of Korean Science*, 47(6), 107-129.
- Hong, Jeongpyo (2018).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publishers about the sales channel and pricing policy of academic e-books. *Studies of Korean Science*, 44(1), 97-125.
- Lee, Hosin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e-book purchasing methods for libraries.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Proceedings*, 43-57.
- Lee, Hosin (2021a). Library's e-book service and copyri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131-154.
- Lee, Hosin (2021b). E-book purchase improvement plan. *2021 KLA 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 Lee, Jiyeon (2014). Exploring progressive strategies for the use of e-books in public libraries. *Discussion to promote e-publishing*, 3-24.
- Lee, Yonghoon & Park, Sangmi (2013). A study on the status of e-book service in public librari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2013 Summer Academic Presentation*, 69-81.
- Oh, Jieun (2014). The position of the public library on the search for a developmental strategy for the use of e-books in the public library. *Discussion to promote e-publishing*, 49-50.
- Oh, Jieun (2021). The library world's position on e-book service, *2021 KLA 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0a). *A Study on Improving B2B Contracts for Electronic Publications in Public Libraries*.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20b).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Publication Standard Contract*. Jeonju: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 Shin, Jeonga (2021). A study on the status of public library e-book lending services - focused on Gyeonggi-do cyber library.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4(2), 97-112.
- Yang, Jiyeol (2012). The law doesn't 'take care of it' - a legal problem with library e-book services. *Planning Meeting*, 330, 42-45.